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및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 지침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 복지시설 중 주·야간 보호시설과 단기 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_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_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_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_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_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_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_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_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_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_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_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_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 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_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_ 생활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_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_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 _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_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_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_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_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_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_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 _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_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_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_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받지 않을 권리

- _ 생활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하는 경우 등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해서는 안 된다.
- _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_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_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_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_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_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_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_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_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_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_ 노인·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_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_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_ 다른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_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 _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_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_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_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_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 _ 노인이 의식주, 보건 의료서비스, 여가 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_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노

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_ 생활 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

노인 학대의 유형과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다.

☑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의 특성

1. 지속성: 오랜 기간 동안 학대 행위가 계속됨
2. 복합성: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
3. 반복성: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
4. 은폐성: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된 노인학대의 유형

-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예) 구타·억압·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 강제 가둠, 이동통제, 생존 위한 식사·장치·약물 등을 단절,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투입, 강제노동 등

_ 예측 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치료 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얼굴, 목, 팔, 다리 등 멍이나 핏자국 흔적, 화상 흔적, 묶임 흔적
- 외관상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서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없는 행동이나 활동 수준의 변화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

- ②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_ 예측 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말하기를 꺼려 하거나 주저함
-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따돌림이나 소외되고 있음을 시설 종사자에게 고함
- 가족, 동료 노인, 종사자 등이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모습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_ 예측 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 어려움을 보이거나 성병에 걸림
-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항문 부위 주변에 타박상이나 하혈
-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임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직원에게 말함

④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통장 갈취, 생활비 미지급, 노인의 재산 사용 통제 등

_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_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예)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야윌 등
(자기방임: 스스로 식사 거부, 비위생적인 주변 환경 등)

_ 예측 징후

- 대·소변 냄새, 옷과 몸에서 악취가 나며 개인위생 관리가 안 된 상태
- 땀띠, 염증, 욕창, 이 등이 방치되어 노인의 건강에 위험한 상태
-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음

- 식사를 자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 복지관 및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거부함(자기방임)

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예) 노인의 시설 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 두절, 낯선 장소에 버림 등

예측 징후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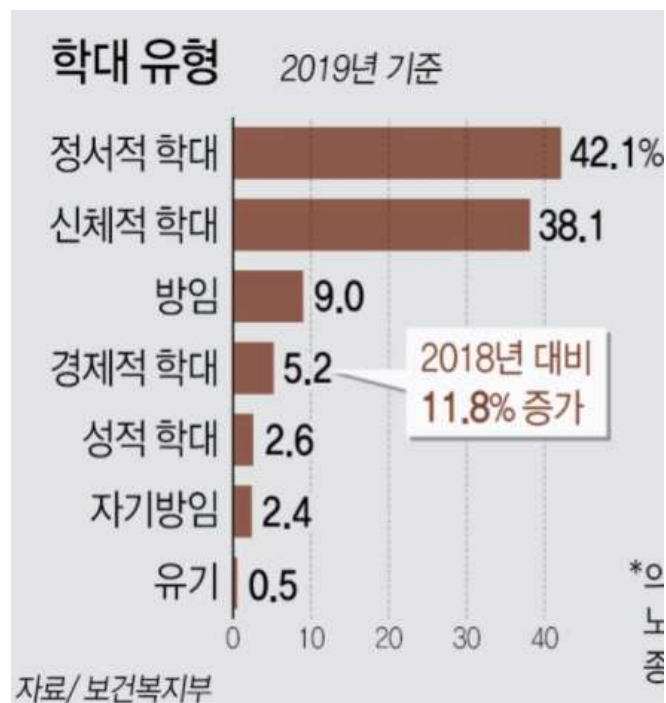
☑ 노인학대 현황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신고 현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코로나 19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폭증하여, 2019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실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노인 보호 전문기관 학대 상담 건수는 전년대비 36.6% 늘었고, 사례 판정 건수도 15.9% 늘었습니다.



이경아 인턴 / 20210615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0년 노인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가 40%, 방임 7.8%, 경제적 학대 4.4%, 성적학대 2.4%, 자기방임 2.3%, 유기 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될 때마다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정서적, 금전적 정서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분노를 풀어낼 희생양을 찾게 되었으며, 그 희생양이 노인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노인 학대 발생 시 요양기관을 비롯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예방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노인학대 발생 시 요양기관의 역할과 임무

• 노인학대 발생 시 요양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노인 보호 전문기관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의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 61조의 2에 따라

노인 보호 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조사,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노인복지시설

①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 사례 발견 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② 시설 이용자 중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③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④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⑤ 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보고 등

3. 관련 기관

— 사법경찰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게 노인 학대 사례 이관 및 공동 개입,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다분야의 보건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 보호팀을 구성·운영 하며, 의뢰받은 학대 피해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

단, 소견 및 증언 진술, 학대 피해 노인 발견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

법률기관

학대 피 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 요양기관의 노인 학대 예방 방법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③ 시설은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 학대 예방 방법

- ①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②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 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⑥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⑦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⑧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긴장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노인학대 신고 및 접수 방법과 노인학대 처벌 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_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_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 원(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_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의 행동 교정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꼭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요양기관에서 학대 행위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인과 관련된 가족, 동료 노인, 외부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의 장과 직원들이 노인학대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양기관 종사자의 역할: 노인학대 목격 또는 노인학대 의심

- ①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
※국번 없이 1577-1389로 전화 시 가까운 지역 내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 또한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해 노인과 가까운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 이관됨
-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③ 신고한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
-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방법**

노인학대 신고 시, 학대 정황에 대해 파악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신고자 관련 정보로

- _ 신고자 인적 사항: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 _ 학대 피해 노인과 관계
- _ 신고자의 욕구: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노인 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 파악 후

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학대 피해 노인 관련 정보

- _ 학대 피해 노인의 상황: 안전 여부, 긴급 분리 보호 여부, 노인의 심신 상태
- _ 학대 피해 노인의 인적 사항: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 _ 학대 내용

- 학대행위자 관련 정보

- _ 학대행위자 인적 사항: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 _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 학대 관련 정보

- _ 학대 발생 여부:
학대 유형, 학대 정도 및 심각성, 학대 발생 일시, 학대 발생 장소, 학대 발생 빈도, 학대 지속 기간 등

- 시설 관련 정보

- _ 학대 내용:
시설 관리·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 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 _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 시설 관련 정보도 파악

- 신고자 관련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자의 욕구 : 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학대피해노인
관련정보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 안전여부, 긴급분리보호여부, 노인의 심신상태 등
-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
- 학대내용

-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

- 학대
관련정보

- 학대 발생여부 : 학대유형, 학대정도 및 심각성,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등

- 시설
관련정보*

- 학대내용 : 시설 관리·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시설 관련정보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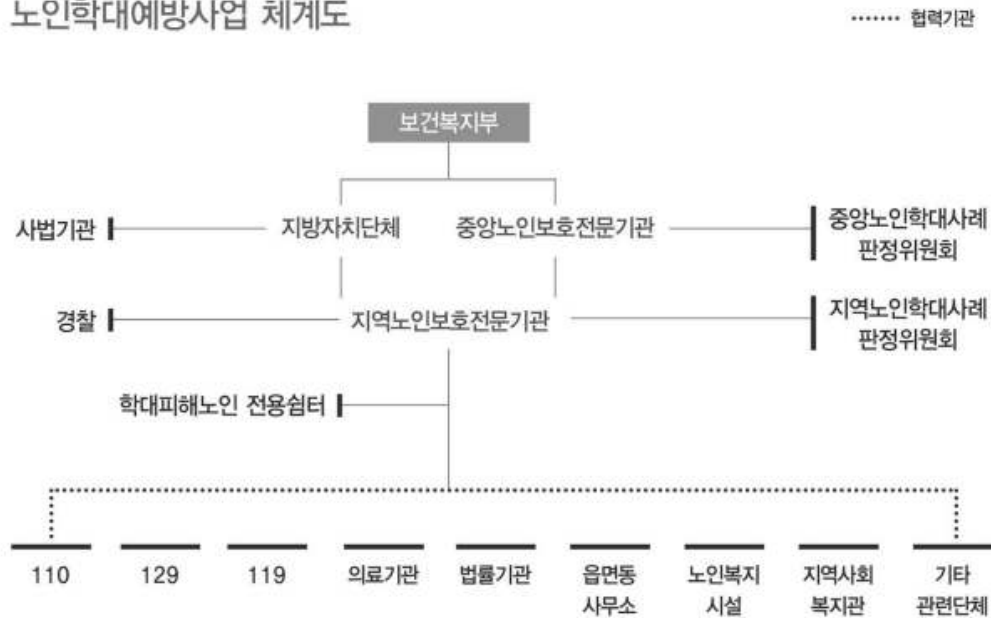
-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_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체계도

-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노인 보호 전문기관,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 나뉨
-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법기관이 해당
- 중앙노인 보호 전문기관에는 중앙노인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가 해당
-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는 경찰, 지역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협력 기관으로는 110, 129, 119, 의료기관, 법률기관, 읍면동 사무소,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기타 관련 단체 등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 노인학대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벌칙 제55조의 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_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벌칙 제55조의 3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_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_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 _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_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_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_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 시)
 - _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함

- 벌칙 제55조의 4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_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_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벌칙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_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
 - _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61조의 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_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노인학대처벌기준



법률	내용	처벌
벌칙 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5조의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신설)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단체 또는 다종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 시)
벌칙 제55조의4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7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제61조의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